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/ 마포구 노고산동 57-50외 5		
의결번호	2017-33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+교통 심의			
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경관법」 제28조 및 「건축법」 제4조,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7조에 의한 경관·건축·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 분야 〉			
□ 건축계획			
○ 당초의 입면계획과 같이 면 분할 및 비례와 측면으로 연결되는 균형 잡힌 외관 디자인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재검토 바람.			
○ 공개공지1에서 썬큰 주변의 띠 형태로 공개공지가 불합리하게 계획되지 않도록 보완하기 바람.			
○ 공개공지2의 면적을 명확히 산정하여 제시 바람. - 필로티 하부 면적, 썬큰 출입통로 면적 제외, D.A 공간 등			
○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의 관광버스 주차 여부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하기 바람.			
○ 일반상업지역 최고높이 제한(100m)에서 최고층 거실 부분의 높이 산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 바람.			
□ 구조			
○ 지하2층 램프가 지하3층에서 없어지는데 대한 구조체 지지계획을 제시 바람.			
□ 방재			
○ 지상1층 북측 피난계단의 피난동선이 복잡하므로 원활하게 개선하기 바람.			
○ 지상1층 로비에서 중앙계단 전실로 출입하는 출입구는 활용성 및 피난 안전성을 고려할 때 설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검토 바람.			
- 계속 -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신촌관광호텔 신축사업 / 마포구 노고산동 57-50외 5		
의결번호	2017-33-3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경관+건축+교통 심의			
< 건축 분야 >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(계속)			
○ 지상1층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 개방 방향을 전실 쪽으로 변경 바람.			
○ 스모크 타워는 건축물 층수 및 제연 송풍량에 대해 적절한 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변경 바람.			
○ 폭 2미터의 소화가스실은 평면계획상 불합리하므로 조정하기 바람.			
○ 침수방지를 위한 집수정의 크기를 확대하고 배수설비 용량을 증대하기 바람.			
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			
○ 태양광패널(BIPV)은 일사량이 많은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 바람.			
< 교통분야 >			
○ 우회전 진입 시 안전을 위하여 진입속도에 의한 정지시야와 운전자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야 내 지장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조치 바람.			
○ 램프 진출차량이 좌측으로 오진입하지 않도록 바닥 포장을 하기 바람.			
○ 지하4층 6m 폭 차로외 굴곡부는 교행이 어려우므로 회전반경 확보를 검토 바람.			
○ 지하3층 기계식 주차공간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바닥·벽 색상을 차별화하고 기계식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기 바람.			
○ 기계식 주차장 앞 대기주차 공간의 위치가 적정한지 재검토 바람.			
○ 지하주차장 승강기홀 입구의 주차면을 재배치하기 바람. 끝.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